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64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265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채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정부안) .....     | 3  |
| 2.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김영진의원안, 정부안) ..... | 19 |
| 3. 고액·상습채납자 감치 신청 면제 사유 신설(정부안) .....  | 26 |



## I. 개요

### 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064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8.

(3) 회 부 일 : 2025. 8. 11.

####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 (이하 “공매등”이라 함)을 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매매 및 보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무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전통적 자산과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그 거래구조에 특수성과 전문성을 띄고 있어 매각 업무의 대행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3조제1항제5호 신설).

## 2. 정부제출(의안번호 제12652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9. 3.
- (3) 회 부 일 : 2025. 9. 4.

###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며, 고액·상습체납자 감치(監置)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이의신청·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정부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제10조의2 신설)<br><input type="checkbox"/> (실태조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 현황에 관한 조사(실태조사) 실시 가능<br><input type="checkbox"/> (실태조사원의 의무) 실태조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타인 제공 및 목적 외 사용 금지<br><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제116조 신설)<br><input type="checkbox"/> (의무 위반 과태료) 정보의 타인 제공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br><input type="checkbox"/> 부 칙<br><input type="checkbox"/>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2)

☐ 개정안은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sup>1)</sup>은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함)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 현황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②조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③조사원이 정보의 타인 제공 및 목적 외

1)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 관련 조직은 지방국세청 징세과에 설치·운영될 예정으로 지방국세청장 및 관할 세무서장을 실태조사 권한 주체로 지정하고 있음.

사용 금지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0조<sup>2)</sup>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원을 채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체납 국세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현재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별도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고, 재산조사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고의적 납부기피 혐의 발견시 「국세징수법」 제10조<sup>등3)</sup>을 근거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

## 2)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창고·사무실·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

음.

또한, 고액·상습 체납추적 조사 전담 조직(73개 세무서, 총 146명)에서 추적조사 업무를 담당 중이고, 현재 일반 체납관리 담당 직원 1인당 평균 713명(체납자), 2,957건(체납건수)의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세청은 징수실적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의 성과를 거두었던 경기도·성남시의 지방세 분야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방세와 구별되는 국세체납의 특성과 전국을 활동지역으로 하는 국세체납 업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 실정에 적합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의 업황 불황으로 폐업이 증가<sup>4)</sup>하고 코로나 발생 이후 대면 체납 정리활동이 제한된 측면이

---

하고 수색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6조(질문·검사)** ①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口頭)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체납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서류에 답변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한 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본문의 서류에 적는 것으로 답변한 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4) 폐업자(천명): ('20) 895 ('21) 885 ('22) 867 ('23) 986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정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연도별 국세체납액 정리실적]

(단위: 억원, 명)

| 구분                    |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 징수결정액                 |    | 3,189,684          | 3,282,495          | 3,804,280          | 4,332,611          | 4,050,595          | 3,971,805         |
| 체납총액<br>(A=B+C-D)     |    | 289,382            | 271,866            | 279,128            | 329,848            | 382,724            | 402,962           |
| 전년 이월(B)              |    | 91,394             | 92,844             | 95,284             | 114,536            | 155,673            | 177,491           |
| 당년 신규(C)              |    | 216,061            | 192,364            | 196,711            | 229,935            | 243,089            | 242,112           |
| 결정취소<br>경정감(D)        |    | △18,073            | △13,342            | △12,867            | △14,623            | △16,038            | △16,641           |
| 정리실적<br>합계<br>(E=F+G) |    | 196,538<br>(100%)  | 176,582<br>(100%)  | 164,592<br>(100%)  | 174,175<br>(100%)  | 205,233<br>(100%)  | 209,400<br>(100%) |
| 현금징수<br>(F)           |    | 112,167<br>(57.1%) | 105,999<br>(60.0%) | 103,003<br>(62.6%) | 114,082<br>(65.5%) | 117,272<br>(57.1%) | 121,407<br>(58.0) |
| 정리보류<br>(G)           |    | 84,371<br>(42.9%)  | 70,583<br>(40.0%)  | 61,589<br>(37.4%)  | 60,093<br>(34.5%)  | 87,961<br>(42.9%)  | 87,993<br>(42.0%) |
| 미정리<br>(H=A-E)        | 금액 | 92,844             | 95,284             | 114,536            | 155,673            | 177,491            | 193,562           |
|                       | 인원 | 943,928            | 864,107            | 849,700            | 985,792            | 1,027,916          | 1,061,643         |

주: 체납총액: 체납액 징수 등 국세청이 정리중인 체납액

현금징수: 체납자가 국세를 납부한 금액

정리보류: 체납자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으로 분류한 금액

정리실적: 현금징수와 정리보류한 금액의 합계

미정리: 체납총액 중 국세청이 현금징수, 정리보류 하지 않은 금액으로 차후년도로 이월하여 징수

자료: 기획재정부

즉,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체납과 상습·악의적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원의 체납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선 전수조사 및 추적조사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세수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납부 능력, 고의성 여부 등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국세체납액 현황]

(단위: 만명, 조원)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체납자 수 | 127.6 | 127.6 | 132.6 | 133.7 | 133.0 |
| 국세체납액 | 98.7  | 99.9  | 102.5 | 106.1 | 110.7 |

자료: 국세청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는 연간 약 130만명 수준으로, 국세체납액은 2020년 98조 7,000억원, 2021년 99조 9,000억원에서 2022년 102조 5,000억원, 2023년 106조 1,000억원에 이어 2024년에는 110조 7,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수, 체납세액 및 징수실적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 신규 공개자 |        | 누계 공개자 |         | 징수실적  |       |
|-------|--------|--------|--------|---------|-------|-------|
|       | 인원     | 체납세액   | 인원     | 체납세액    | 인원    | 납부세액  |
| 2020년 | 6,965  | 48,203 | 57,420 | 502,739 | 5,841 | 2,760 |
| 2021년 | 7,016  | 53,612 | 50,033 | 433,344 | 5,505 | 3,610 |
| 2022년 | 6,940  | 44,196 | 48,356 | 425,609 | 5,587 | 3,055 |
| 2023년 | 7,966  | 51,313 | 48,058 | 442,000 | 6,102 | 3,097 |
| 2024년 | 9,666  | 61,896 | 51,676 | 467,285 | 6,280 | 3,031 |

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제114조)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 신규 공개자 수는 2020년 6,965명에서 2024년 9,66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체납세액은 2020년 4조 8,203억원에서 2024년 6조 1,896억원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고의체납은 엄정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은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납자를 유형화<sup>5)</sup>하여 사례별 맞춤형 징수 관리를 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납세 원칙을 재정립하고, 투명한 세정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사원의 활동이 조세 정의 실현과 세수 확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기간제 근로자인 조사원의 활동은 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 등 단순한 사실행위로 볼 수 있어 그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기능상으로도 직접적인 징수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아울러,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

---

5)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의 과거 체납 이력, 재산·소득 유무 등 관련 자료와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기반으로 체납유형을 생계형체납자, 납부 무능력자, 납부기피자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적 기준은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임.

자를 1회 이상 방문하여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유형을 분류할 계획으로, 이는 체납자의 납부 능력이나 고의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재분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징수보다는 체납자의 관리와 분류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국세 체납관리단 관련 예산으로 12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의 편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조사원의 활동은 확정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내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은 향후 입법 진행 경과에 따라 해당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 편성안]

| 세부 산출 내역                                                                                                                                                                                                                                                                                                                                                                                                                                                                                                                                                                                                                                                                                                                                                                      |
|-------------------------------------------------------------------------------------------------------------------------------------------------------------------------------------------------------------------------------------------------------------------------------------------------------------------------------------------------------------------------------------------------------------------------------------------------------------------------------------------------------------------------------------------------------------------------------------------------------------------------------------------------------------------------------------------------------------------------------------------------------------------------------|
| <p>○ <b>일용임금(110-04) : 7,840백만원</b></p> <p>가. 근로자 급여 (6,78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급여 : 500명×219일×6시간×10,320원(26년 시간당 최저임금)=6,780백만원</li> </ul> <p>나. 정액급식비 (44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액급식비 : 500명×110천원×8개월=440백만원</li> <li>• 140천원(공무원 정액급식비)×(6시간/8시간)÷110천원</li> </ul> <p>다. 초과근무수당 (619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과근무수당 : 500명×10시간×8개월×15,480원=619백만원</li> </ul> <p>○ <b>일반수용비(210-01) : 134백만원</b></p> <p>가. 홍보비용 (2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00천원(팸플릿, 행사 관련 비용)×7개 지방청=28백만원</li> </ul> <p>나. 소모품비 (10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77천원×10개(7개 지방청+3개 1급지 지방청)×9개월=106백만원</li> </ul> <p>○ <b>공공요금및제세(210-02) : 145백만원</b></p> |

## 세부 산출 내역

- 가. 공공요금 (110백만원)
  - 1,000천원×10개(7개 지방청+3개 1급지 지방청)×11개월=110백만원
- 나. 문자발송비용(CI비용) (35백만원)
  - 100원×350천명(1차 체납자수)=35백만원
- **피복비(210-03) : 28백만원**
  - 가. 피복비 (28백만원)
    - 50천원(조끼 및 조사원증 등)×570(실태확인원 500명+7개 지방청별 여분 10개씩)=28백만원
- **임차료(210-03) : 2,407백만원**
  - 가. 사무실 임차료 (935백만원)
    - 85,000천원(7개 지방청 한달 임차료)×11개월=935백만원
  - 나. 차량 임차료 (1,142백만원)
    - 1,050천원×122대×9개월=1,142백만원
  - 다. 사무기기 임차료 (330백만원)
    - 30,000천원×11개월=330백만원
- **유류비(210-08) : 305백만원**
  - 가. 차량유류비 (305백만원)
    - 2,500천원(3만km 주행시)×122대=305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385백만원**
  - 가. 사무실 관리비 (385백만원)
    - 3,500천원×11개월×10개(7개 지방청+3개 1급지 지방청)=385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7백만원**
  - 가. 사업추진비 (7백만원)
    - 1,000천원×7개(지방청수)=7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817백만원**
  - 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817백만원)
    - (근로자 급여 6,780백만원+초과근무수당 619백만원)×11.04%(4대보험비율)=817백만원
- **공사비(420-03) : 479백만원**
  - 가. 공사비 (479백만원)
    - 3,400천원×사무실 상주인원(기간제 근로자 및 상주 관리 공무원 약 141명)=479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조사원의 역할은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 체납 현황을 조사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사권한을 부여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인격권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조사원이 체납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특히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절차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본래의 단순 확인 범위를 넘어 준조사권적 권한이 부여될 수 있고, 또한 조사원이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체납자의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도 있음.

넷째, 조사원의 업무 범위를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사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안)]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개정안에서는 조사원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원의 직무 범위는 단순히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직무 수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섯째,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의 사이에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됨.<sup>6)</sup>

「통계법」 제26조<sup>7)</sup>에서는 통계종사자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34조에서 통계조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sup>8)</sup>

6) 법제이론과 실제, 2024년 개정증보판, p.810

7)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과 비교할 경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편차가 과도하여 제재조항 간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과태료 금액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타 법령의 경우 업무상 다루는 정보 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벌칙 규정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적정한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벌칙 부과 유사 입법례]

| 법률    | 비밀유지의무                                                                                                                                            | 벌칙                                                                                                                                                                               |
|-------|---------------------------------------------------------------------------------------------------------------------------------------------------|----------------------------------------------------------------------------------------------------------------------------------------------------------------------------------|
| 통계법   |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과태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b>100만원 이하의 과태료</b> 를 부과한다.<br>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제27조의2(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b> 에 처한다.<br>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 주민등록법 | 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b> 에 처한다.<br>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 법률                                | 비밀유지의무                                                                                                                               | 벌칙                                                                                                                                                                                       |
|-----------------------------------|--------------------------------------------------------------------------------------------------------------------------------------|------------------------------------------------------------------------------------------------------------------------------------------------------------------------------------------|
| 개인정보<br>보호법                       |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br>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u>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u>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 사회복지<br>사업법                       |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u>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br>6. 제47조를 위반한 자                                                                                                  |
| 화재의<br>예방 및<br>안전관리<br>에 관한<br>법률 |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⑥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u>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00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br>6. 제41조제6항 및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u>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u>                   |

여섯째,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현재 조사원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거 조사원이었던 자는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과세정보 등 조사원이 업무상 취급한 정보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며, 실제로 다른 법령에서도 과거 해당 업무에 종사했던 자에게까지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단순히 ‘조사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조사원 또는 조사원이었던 자’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비밀 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개정안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조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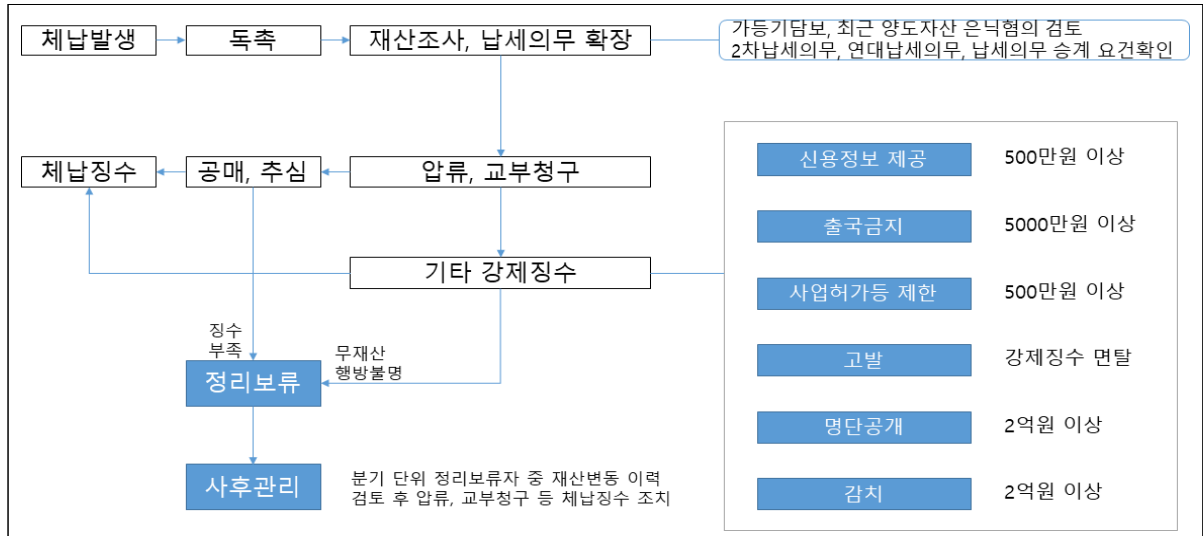
조사원은 체납자의 거소, 수입,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나 질문, 납부 의사 및 계획 확인 등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

이러한 조사원 역할의 중요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며, 그에 따라 하위법령에는 실태조사의 방법·절차뿐 아니라 조사원의 교육 및 감독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조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147 |

## 참고1

## 국세 체납 징수 절차



- **(징수절차)** 체납 발생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면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시작으로 체납징수업무 개시
  - 우선 체납액 **납부 독려**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경매를 통해 체납액을 **추심**
  - 또한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체납액 규모와 발생기간 등에 따라 기타 강제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 납부독려
-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재산조사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고의적 납부기피** 혐의 발견시 **추적조사 실시**
  - 체납추적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체계 강화
- \* (지방청) '13년 지방청 체납추적과 신설, (세무서) '22년 8개 서 추적전담반 시범 운영 후 확대 → '23년 19개 서 → '24년 25개 서 → '25년 73개 서
- **(정리보류)** 체납정리 과정에서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
  - \* 일부 국세징수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사실행위 위탁

## 참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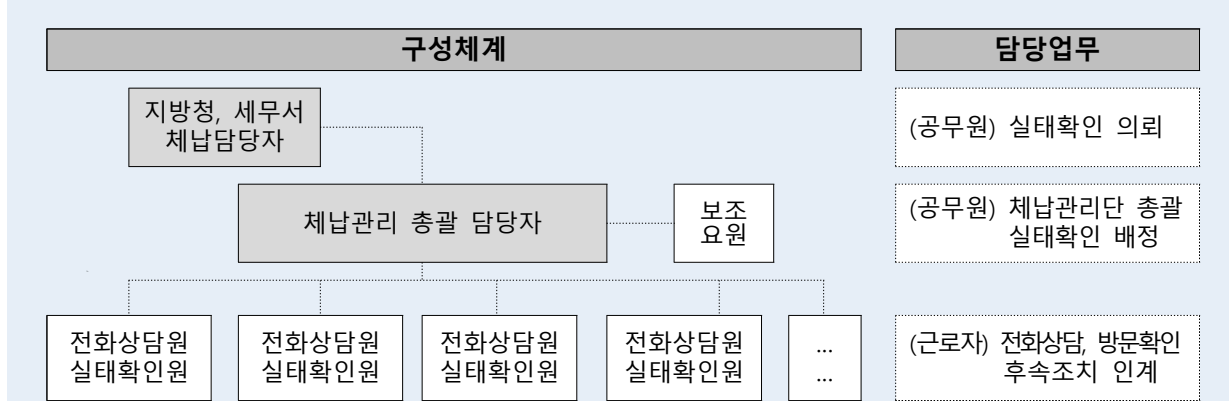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안)

- 국세청은 장수실적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의 성과를 거두었던 경기도·성남시의 지방세 분야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 지방세와 구별되는 국세체납의 특성\*과 전국을 활동지역으로 하는 국세체납 업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 실정에 적합한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 중
- \* 지방세는 주로 재산에 과세되는 반면, 국세는 소득·거래에 과세되며 그 규모가 큼
- 총 3년간('26년~'28년) 모든 체납자('24년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
-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7개 지방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국세 체납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

#### 체납관리단 조직구성(단계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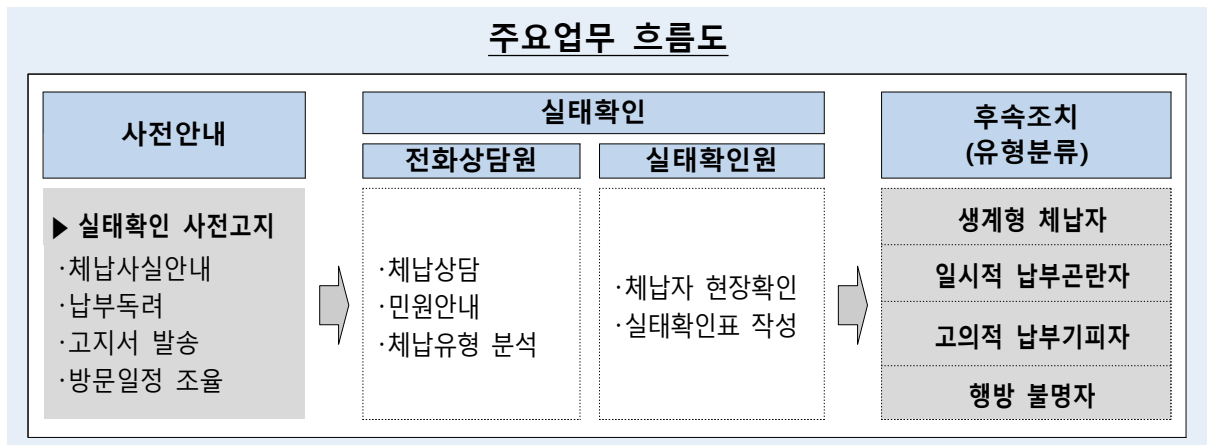
#### 「국세 체납관리단」 구성체계와 담당업무



-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

\*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질문, 납부의사 및 납부계획 확인 등

- (예비단계) ①체납관리 총괄 담당자는 실태확인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전화상담원에게 배정하고, ②전화상담원은 방문대상 체납자에게 문자메시지·전화 등으로 실태확인 사전안내 후 ③실태확인원에게 방문대상 명단과 실태확인표 등을 교부
- (실태확인) 실태확인원은 전달받은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거실태, 생활환경, 체납사유 등을 질문·확인하는 등 체납자 유형분류를 위해 세밀하게 실태확인을 실시



## 2.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김영진의원안, 정부안)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공매등의 대행(제103조제1항)<br><input type="checkbox"/> 관할 세무서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br>- 공매(제1호)<br>- 수의계약(제2호)<br>-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제3호)<br>- 금전의 배분(제4호)<br><u>&lt;신 설&gt;</u> |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br><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u>가상자산의 매각</u><br><input type="checkbox"/> 부 칙<br><input type="checkbox"/>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 김영진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64),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2)

☐ 개정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강제징수는 ①재산의 압류, ②압류재산의 매각, ③청산의 절차로 이루어짐.

이 중 ‘압류’는 채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시키는 관할 세무서장의 행위를 말하며 가상자산의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5조<sup>9)</sup>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9) 「국세징수법」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채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채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채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압류재산의 매각’이란 징세관서가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기 위해 그 소유권을 채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 전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금전 외의 재산을 환가하는 수단이며, 현재 가상자산의 매각과 관련,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6조<sup>10)</sup>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하고 있음.

### [연도별 국세청 가상자산 징수실적]

(단위: 억 원)

| 구분    | 징수실적<br>(①+②) | 현금징수(①) | 채권확보(②) |      |    |
|-------|---------------|---------|---------|------|----|
|       |               |         | 소계      | 압류 등 | 매각 |
| 합계    | 1,461         | 730     | 736     | 718  | 18 |
| 2021년 | 712           | 425     | 287     | 287  | -  |
| 2023년 | 368           | 187     | 181     | 181  | -  |
| 2024년 | 381           | 113     | 268     | 250  | 18 |

주: 2022년 강제징수 업무 대신 추적조사 실시

자료: 국세청

□ 「국세징수법」은 채납액의 완전한 징수와 채납자의 보호를 위하여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sup>11)</sup>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채납자를 대위하

#### 10) 「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채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11) 공매(公賣)란 공기관에 의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그리고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를 말함.

여 받은 물건(금전 제외)이 공매의 대상임.

다만, 공매의 대상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사업자를 통한 즉시 매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21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세무서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매각 경험이 적어 전문성 축적이 제한적이며, 세무서별로 별도의 계정과 계좌를 관리해 업무량이 증가하여 가상자산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지연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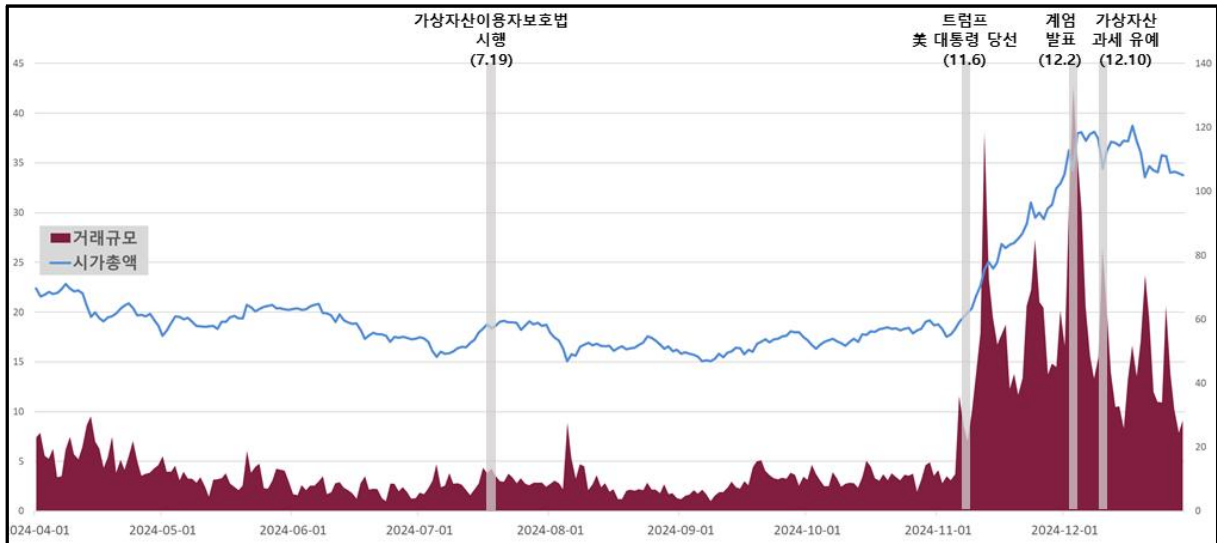
□ 개정안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의 특수성<sup>13)</sup>을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계정의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가상자산 매각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

12) 관할 세무서장(채납담당자)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기 위해 각각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속하여 매각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가상자산 매각 시 세무서(133개)마다 가상자산 거래소(5개) 계정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음.

13)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 예측이 어렵고, 가격변동이 심한 자산으로 매각결과에 따라 채납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또한, 채납담당자의 가상자산 매각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시세 변동에 따른 채납자와의 민원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매각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 및 시가총액 추이('24.4월~'24.12월) ]



자료: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5. 5.

□ 2024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1,345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상반기(1,087조원)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이며, 이러한 거래규모의 성장세는 가상자산이 국내 경제 및 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급등<sup>14)</sup> 및 가상자산 압류 규모 확대<sup>15)</sup>로 인해 국세 체납 등과 관련하여 압류된 가상자산의 매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대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전국 세무서에서 의뢰되는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

14) 비트코인 가격: (21.1.1.) 56백만원 → (24.1.1) 139백만원 → (25.1.1) 151백만원

15) 가상자산 징수실적(총 1,461억원): ('21년) 712억원, ('23년) 368억원, ('24년) 381억원

※ 2022년 강제징수 업무 대신 추적조사 실시

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납 재산의 효율적인 회수와 공매 절차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도 실효성 있는 조치로 보여짐.

□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상자산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 매각대행 절차, 매각 시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사례가 없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상자산계좌, 전산, 인력, 규정 등)도 현재는 미비한 상황이므로 사전 준비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기간을 2026년 7월 1일에서 2026년 10월 1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
|--------------|
| 문 의 처        |
| 02)6788-5147 |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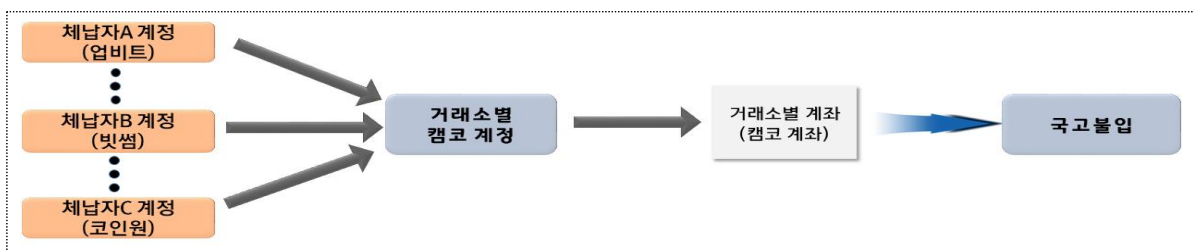
## 가상자산 매각 · 추심 및 국고불입 절차

### □ 국세청 추심(현행)



- ① (세무서장) 거래소별 계좌·계정 개설(133개 세무서, 5개 은행), 계좌·계정 연결, 채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통지(매각 예정일 명시),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전요청서 송부
- ② (가상자산 거래소) 채납자 계정의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
- ③ (세무서장) 매각예정일에 이전된 가상자산 **당일 매각**  
\* 매각예정일을 도과하여 매각 시 채납자 민원 또는 소송 가능성
- ④ (세무서장) 매각 후 현금 거래소별 세무서 계좌로 이체 출금
- ⑤ (세무서장) 세무서 채납정리 계좌로 이체
- ⑥ (세무서장) 채납정리계좌에서 국고불입

### □ 캠프 위탁(개정안)



- ① (세무서장) 채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통지, 캠프에 가상자산 매각대행 의뢰 및 채납명세 제공
- ② (캠프) 채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대행 통지
- ③ (캠프)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전요청서 송부
- ④ (캠프) 이전된 가상자산 매각 → 거래소별 계좌 이체 → 국고 불입(기 제공된 채납명세)

### 3. 고액·상습채납자 감치 신청 면제 사유 신설(정부안)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고액·상습채납자 감치(제1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li> <li>-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li> <li>-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채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li> </ul> </li> <li>○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장은 고액채납자에 대해 감치를 신청하고 법원은 30일 범위 내 감치 명령</li> </ul> </li> </ul> <p><u>&lt;신 설&gt;</u></p> | <input type="checkbox"/> 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같음)</li> </ul><br><input type="checkbox"/> 감치 면제 사유(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u></li> <li>- <u>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u></li> <li>-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u></li> </ul> <input type="checkbox"/> 부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일: 2026년 4월 1일</li> <li>○ 적용례: 2026년 4월 1일 이후 국세청장이 감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li> </ul> |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2)

□ 현행법 제115조<sup>16)</sup>에서 국세청장은 고액·상습채납자에 해당하는 경우 채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채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채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채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고액·상습채납자 감치 제도는 202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한 간접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채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벌로서 상징적인 강제 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제도 도입 이후 감치 신청 건수는 2023년에 6건, 2024년에 4건, 2025년에 3건으로 총 13건에 이르나, 실제 감치 집행이 완료된 사례는 총 5건으로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고액·상습채납자가 감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채납액이 납

---

16) 「국세징수법」

**제115조(고액·상습채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채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채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채납하고 있고, 채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채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 채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채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② 국세청장은 채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채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채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채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채납자는 동일한 채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채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채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및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 신청 및 실제 감치건수]

(명, 억원)

| 구분    | 감치<br>검토 | 감치<br>신청 | 검찰·법원   |          |          |      |     |     |                |
|-------|----------|----------|---------|----------|----------|------|-----|-----|----------------|
|       |          |          | 진행<br>중 | 기각<br>결정 | 감치<br>결정 | 감치기간 |     |     | 감치<br>집행<br>완료 |
|       |          |          |         |          |          | 10일  | 20일 | 30일 |                |
| 2021년 | 882      | -        | -       | -        | -        | -    | -   | -   | -              |
| 2022년 | 1,634    | -        | -       | -        | -        | -    | -   | -   | -              |
| 2023년 | 6,352    | 6        | -       | 2        | 4        | 1    | 1   | 2   | 4              |
| 2024년 | 12,904   | 4        | 2       | 1        | 1        | -    | -   | 1   | 1              |
| 2025년 | -        | 3        | 2       | 1        | -        | -    | -   | -   | -              |
| 합계    | 21,772   | 13       | 4       | 4        | 5        | 1    | 1   | 3   | 5              |

자료: 기획재정부

□ 개정안은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①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②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감치를 면제하려는 것임.

이와 같은 조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하여 감치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치로 인한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감치를 면제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

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실제로 2021년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이 강화된 이후  
채납액 납부가 감소한 사례가 있어, 감치 대상자가 일정 비율  
(50%) 이상 채납액을 납부할 경우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채납액 납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  
야 할 것임.

[채납액 납부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 인원 및 금액]

(명, 억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제외인원 | 142   | 181   | 20    | 25    | 28    | 38    |
| 납부액  | 2,302 | 2,538 | 211   | 409   | 450   | 611   |

자료: 기획재정부

문 의 처

02)6788-5147

## 참고

## 고액·상습채납자 감치 제도

- (개요) 채납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채납자를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유치하여 국세 납부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

\* '21년 도입되어 '23.3월 최초로 법원 감치 결정 확정

- (요건) 아래 사유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감치 신청

\* 채납자의 주소·거소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

- ① 3회 이상 국세를 채납하여 채납 후 각 1년이 경과하고 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②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납한 경우
- ③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절차) 국세청장 감치 신청 → 검사 감치 청구 → 법원(재판) 감치 결정 → 감치 집행

- (효과)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채납자 감치\*

\* 채납된 국세 납부시 감치 절차 및 집행 종료

- 참고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54)

**제54조(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채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채납하고 있고, 채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채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채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채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납한 경우
- ② 행정청은 과태료 채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채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채납자는 동일한 채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